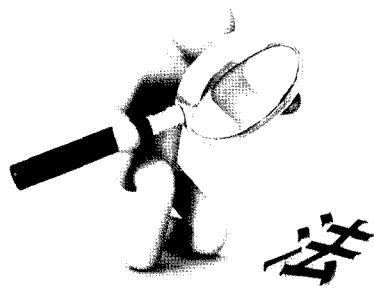


## 생활법률



알기쉬운  
생활법률 사례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 :** 저는 35세의 주부로서 그동안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나, 최근 남편의 실직과 저의 무자력 등으로 위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비자파산제도란 어떤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A : 소비자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해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소비자파산(消費者破産)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0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0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3. 파산선고 불이익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2)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p>(☞)</sup>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